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80호 2022. 10. 5.(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59호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2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102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 ..... 43

거창군 고시 제2022-106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양평생활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 49

거창군 고시 제2022-107호 도로명주소 고시 ..... 51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368호 공인 등록 공고 ..... 52

<b>회 램</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2년 10월 5일

거창군 훈령 제459호

###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장 제목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안전보건관리체제”로 하고  
제1조부터 제1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거창군이 시행  
하는 사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 체제와 안전보건활  
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  
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거창군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군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제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군수는 법 제2조 제7호 도급인이 될 때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된다.

**제5조(관리감독자의 임명)**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각 사업장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청 담당관·과,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한다.

② 군수는 각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장 외의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 담당주사 이상의 직급의 자를 임명한다.

**제6조(산업보건의의 위촉)**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 외의 사람으로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체제의 처리방법)** 군수는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임명, 지정, 위촉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전자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서류를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보건 확보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수반하는 비용은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관리감독

자에게 위임하여 실시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안전총괄과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총괄과장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결과를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질 때에는 근로시간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직무교육)** 관리감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이수 결과를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리감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보좌를 받아 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현황
2.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3.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 방안
4.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사항 점검 계획
5. 거창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계획
6. 안전보건 예산 편성 현황 및 추진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안전보건 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감독자는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실행계획(이하 “부서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부서별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2.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3. 소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 방안
4.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소통 방안
5.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아차사고 처리 절차)**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 자신 또는 동료의 불안정한 행동이나 기계, 기구, 설비의 결함에 의해 일어났던 사고(이하 “아차사고”라 한다)를 인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차사고로 제출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며, 관리감독자에게 아차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지시를 받은 즉시 아차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한 후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총괄과장은 개선결과를 확인하여 미흡사항은 다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선이 완료된 경우 종사자에게 원인 및 대책, 개선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안전총괄과장은 아차사고 원인 및 개선결과를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업 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면 관할 사업장의 평가대상 작업장을 선정하여 작업 전 점검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조사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안전보건 정보조사표를 근거로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제1항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위험성 크기를 산출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관리감독자는 작업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2.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작업중지 및 현장 보존조치

**제2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발생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총괄과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안전총괄과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보고가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관리감독자와 종사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운영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제39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73조가 필요하지 않은 산업재해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관련 종사자를 참여시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을 얻어 사고조사를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가 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재발방지대책 수립사항을 해당 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장 제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창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구성한 거창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자위원이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현업 업무 종사자들이 결정한 근로자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명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총괄과장
4. 경제교통과장
5. 건설과장
6. 농업기술센터소장
7. 산림과장
8. 환경과장
9. 행정과장

③ 현업업무 종사자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현업업무 종사자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의 대표와 근로자의 대표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군수가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공무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제30조·제31조, 제7장(제32조·제33조)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거창군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거창군이 시행하는 사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 체제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거창군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무원·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한다.</u></p>	<p><u>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거창군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u></p>
<p><u>제3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u>  <u>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질·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u></p>	<p><u>제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군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u></p>
<p><u>제4조(준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과 이와 관련된 제반 시행기준 및 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u></p>	<p><u>제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군수는 법 제2조 제7호 도급인이 될 때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된다.</u></p>
<p><b>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b></p>	<p><b>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b></p>
<p><u>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군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u></p>	<p><u>제5조(관리감독자의 임명)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각 사업장과 그 소</u></p>

현 행	개 정 안
<p>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p>	<p>속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한다. ② 군수는 각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장 외의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 담당주사 이상의 직급의 자를 임명한다.</p>
<p><b>제6조(관리감독자)</b>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영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b>제6조(산업보건의의 위촉)</b>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 외의 사람으로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b>제7조(안전관리자)</b>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두고 영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7조(안전보건관리체제의 처리방법)</b> 군수는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임명, 지정, 위촉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전자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서류를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p>
<p><b>제8조(보건관리자)</b>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p>	<p><b>제8조(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b> ① 군수는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보건 확보의 생활화</p>

현 행	개 정 안
<p>계 지도·조언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두고 영 제22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수반하는 비용은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b>제9조(안전보건교육)</b> 군수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p>	<p><b>제9조(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b></p> <p>①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관리감독자에게 위임하여 실시한다.</p> <p>② 관리감독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안전총괄과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안전총괄과장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결과를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질 때에는 근로시간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p>
<p><b>제10조(안전보건교육)</b> ①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교육</li> <li>2. 채용 시의 교육</li> <li>3.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li> <li>4.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li> </ol> <p>②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시행</p>	<p><b>제10조(관리감독자 직무교육)</b> 관리감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이수 결과를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리감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규칙 제26조 제3항에 있는 사람이 실시한다.</p>	
<p><b>제11조(직무교육)</b>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p> <p>1. 관리책임자</p> <p>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p> <p>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p> <p>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p> <p>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p> <p>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p>	<p><b>제11조(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b></p> <p>① 군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보좌를 받아 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재해 예방 관련 현황</li> <li>2.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li> <li>3.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 방안</li> <li>4.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사항 점검 계획</li> <li>5. 거창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계획</li> <li>6. 안전보건 예산 편성 현황 및 추진 계획</li> <li>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군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p>
<p><b>제12조(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실행)</b></p> <p>①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초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p> <p>②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 계획은 전 부서에 알리고, 사업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b>제12조(안전보건 관리 실행계획의 수립)</b></p> <p>① 관리감독자는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실행계획(이하 “부서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부서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서별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계획</li> </ol>

현행	개정안
	<p>2.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p> <p>3. 소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 방안</p> <p>4.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소통 방안</p> <p>5.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제13조(위험성평가 실시) ①</u> 군수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u>②</u>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p> <p>2. 위험성 결정의 내용</p> <p>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p> <p>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u>③</u>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가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다.</p>	<p><u>제13조(아차사고 처리 절차) ①</u> 관리감독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 자신 또는 동료의 불안정한 행동이나 기계, 기구, 설비의 결함에 의해 일어날만한 사고(이하 “아차사고”라 한다)를 인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②</u>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차사고로 제출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어서는 안되며, 관리감독자에게 아차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지시하여야 한다.</p> <p><u>③</u>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지시를 받은 즉시 아차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한 후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④</u> 안전총괄과장은 개선결과를 확인하여 미흡사항은 다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선이 완료된 경우 종사자에게 원인 및 대책, 개선결과를 알려야 한다.</p> <p><u>⑤</u> 안전총괄과장은 아차사고 원인 및 개선결과를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한다.</p>
<신설>	제13조의2(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현행	개정안
	<p><u>차)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업 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u></p> <p><u>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면 관할 사업장의 평가대상 작업장을 선정하여 작업 전 점검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조사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u></p> <p><u>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안전보건 정보조사표를 근거로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제1항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위험성 크기를 산출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u></p> <p><u>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결과 허용불가능한 위험성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25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제25조(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관리감독자는 작업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u></li> <li><u>2.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작업중지 및 현장 보존조치</u></li> </ol>
<p><u>제2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u></p> <p><u>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u></p>	<p><u>제2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발생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총괄과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u></p> <p><u>② 안전총괄과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보고가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u></p>

현 행	개 정 안
<p>알리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p> <p>④ 사고조사는 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하여 조사하고 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관리감독자와 종사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운영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제39조를 준용한다.</p> <p>④ 법 제73조가 필요하지 않은 산업재해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관련 종사자를 참여시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을 얻어 사고조사를 한다.</p> <p>⑤ 관리감독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가 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재발방지대책 수립사항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6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b></p>	<p><b>제6장 거창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b></p>
<p>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p> <p>1. 근로자위원</p> <p>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p> <p>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p>	<p>제2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구성한 거창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자위원이 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현업 업무 종사자들이 결정한 근로자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자</li> <li>2. 보건관리자</li> <li>3. 안전총괄과장</li> <li>4. 경제교통과장</li> <li>5. 건설과장</li> <li>6. 농업기술센터소장</li> </ol>

현 행	개 정 안
<p><u>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u></p> <p>2. 사용자위원</p> <p>가.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p> <p>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1인</p> <p>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1인</p> <p>라.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사업장 업무 담당부서의 장</p> <p>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선출한다.</p>	<p>7. 산림과장</p> <p>8. 환경과장</p> <p>9. 행정과장</p> <p>③ 현업업무 종사자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현업업무 종사자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의 대표와 근로자의 대표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p> <p>④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군수가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공무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1명씩 둘 수 있다.</p>
<p><u>제30조(운영)</u> ①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 안건이 없을 경우 정기회의를 생략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1명씩 둘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영 제39조에 따라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u>제31조(회의록 작성)</u>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최일시 및 장소</li> <li>2. 출석위원</li> <li>3. 회의내용 및 심의·의결사항</li> <li>4. 그 밖의 토의 사항</li> </ol>	<p>&lt;삭 제&gt;</p>
<p><u>제7장 보칙</u></p>	<p>&lt;삭 제&gt;</p>
<p><u>제32조(문서보존연한)</u>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재해 발생기록</li> <li>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li> <li>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li> <li>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li> <li>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li> <li>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li> <li>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li> <li>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li> </ol> <p>②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u>제33조(변경 절차)</u>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lt;삭 제&gt;</p>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보건교육 증명서류

<h1>안전보건교육 일지</h1>		결 재	담당자	담당주사	과장
교육일시 : 2022. . . 시간기재 (예. 13:00~16:00)					
교육과정	가. 정기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마. 기타( )교육 (과정종류 체크)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참조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 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 실시자 수				
교육내용	예시) 1. 보호구 종류 및 사용법 - 보호구의 종류 : 000, 000 -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 ※ 작업 내용 별 착용 보호구 착용 방법 등을 부서실정에 맞게 작성 3. ‘내 몸을 지키는 보호구’ 동영상 교육(교육시 활용) 4. 산업재해예방 골든타임 동영상교육(교육시 활용) 5. 작업내용 별 유해·위험요인 ※ 도로변 풀베기 시 신호수 배치, 미끄럼 방지 등				
교육 강사명 및 장소	직 위	성 명	교육장소		비 고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는 부서장, 읍면장 등 별도 임명된 사람		
기 타					

##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소속	직 급	성 명	서 명	비고
1		기간제는 작성 불필요		정자체 서명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진

교육사진

교육사진



아차사고 보고서		결 재	담당자	담당주사	과장
발생소재지					
발생일시		발생지역			
작업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복수( )명	기 인 물 (사고원인 물체·물질)			
발생형태		아차사고 유발 공정 및 내용			
<p>&lt; 발생과정 &gt;</p> <p>1.</p> <p>2.</p> <p>3.</p>					
<p>&lt; 조치계획 &gt;</p> <p>1.</p> <p>2.</p> <p>3.</p>					
조치 결과	<p>1.</p> <p>2.</p> <p>3.</p>				

## 조치결과 전·후 사진

부서명 :

조치 전		조치 후	
사진설명			
조치 전		조치 후	
사진설명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2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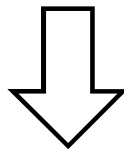
사업장명: 거창군 0000과



# 방침 및 추진목표

## 안전보건경영방침

01.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02.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 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킨다.
03.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04.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05. 안전사고 예방과 개선대책 마련에 모든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천한다.



## 추진목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을 감소시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창군 조성**
- **매년 위험성평가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낮음” 단계 유지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경상남도 거창군 \_\_\_\_\_ 과장 \_\_\_\_\_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승인	관리감독자
기안	위험성평가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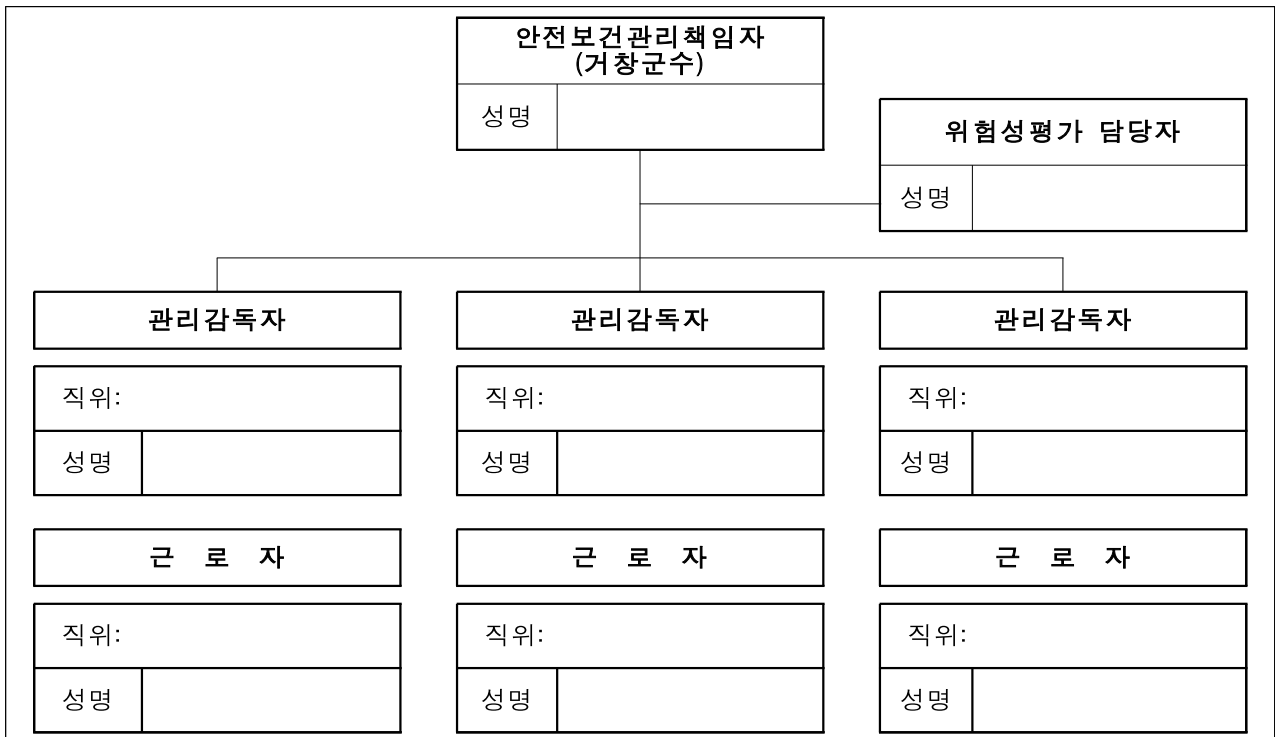
사업장명 :	제정 :
문서번호 :	개정 :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거창군 000과 관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거창군 000과에서 시행하는 전 사업의 종사자가 수행하는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표 1> 과 같이 한다.

<표 1> 위험성평가 조직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표 2> 와 같이 한다.

<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p>《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의 의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li> <li>-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li> <li>-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li> </ul> </li> <li>○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li> <li>○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li> </ul>
관리감독자	<p>《위험성평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li> <li>○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li> <li>○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li> <li>○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li> </ul>
근로자 (작업자)	<p>《위험성평가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li> <li>○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li> <li>○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li> <li>○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li> </ul>
위험성평가 담당자	<p>《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li> <li>○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li> <li>○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li> <li>○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li> </ul>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① 거창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거창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최초 평가(전체작업을 대상)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한다.
- ② 정기평가 : 전년도 실시한 날짜 도래일 기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장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 다.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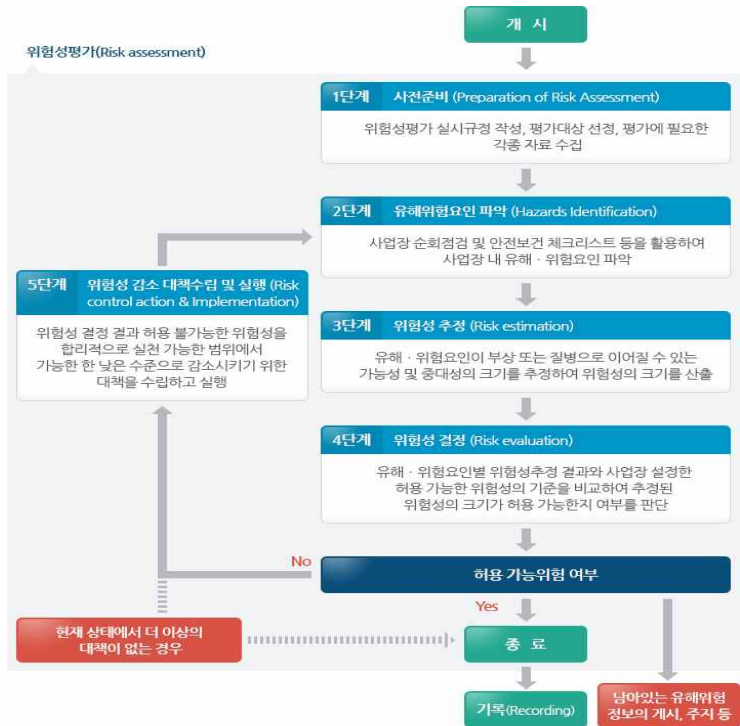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하며, 군수에게 보고한다.
-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반기 1회 실시한다.)
- ④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감소대책 수립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참여한다.
-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 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추정  
 ⇒ 【4단계】 위험성 결정  
 ⇒ 【5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표 3>과 중대성<표 4>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3〉 가능성(빈도)

구분	가 능 성		기 준
최상	빈번함 (매우높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li> <li>○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li> <li>○ 1일 1회 정도 발생(노출)</li> </ul>
상	가능성 높음 (높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li> <li>○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지·표시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li> <li>○ 주 1회 혹은 수일 내 발생(노출)</li> </ul>
중	가능성 있음 (보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li> <li>○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지역 접근, 위험지역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li> <li>○ 분기 1회 정도 발생(노출)</li> </ul>
하	가능성 낮음 (낮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li> <li>○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지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li> <li>○ 반기 1회정도 발생(노출)</li> </ul>
최하	가능성 거의없음 (매우낮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li> <li>○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li> <li>○ 1년 1회 정도 발생(노출)</li> </ul>

〈표 4〉 중대성(강도)

구분	가 능 성	기 준
최대	중대재해	5 ○ 사망, 후유 장애 등 치명적 재해
대	중대휴업재해 (장해발생)	4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휴업 1월 이상인 재해
중	경미한 휴업재해	3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소	불휴업재해	2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최소	영향 없음	1 ○ 재해로 인한 인적손실 없음

〈표 5〉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5(최대)	4(대)	3(중)	2(소)	1(최소)
5(최상)	매우높음 25	높음 20	높음 15	보통 10	매우낮음 5
4(상)	매우높음 20	높음 16	보통 12	낮음 8	매우낮음 4
3(중)	높음 15	보통 12	낮음 9	낮음 6	매우낮음 3
2(하)	보통 10	낮음 8	낮음 6	매우낮음 4	매우낮음 2
1(최하)	매우낮음 5	매우낮음 4	매우낮음 3	매우낮음 2	매우낮음 1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5단계의 매우 낮음(1~5), 낮음(6~9), 보통(10~12), 높음(15~16), 매우 높음(20~25)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 리 수 준	허용 여부	비 고
20~25	매우 높음	즉시작업중지(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하는 위험)	불가능	실험 중지 및 개선  조건부 실험 수용
15~16	높음 (상당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실시하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10~12	보통 (경미한 위험)	위험표지 부착, 작업절차서 관리		
6~9	낮음 (미미한 위험)	주기적 안전교육 제공 필요	가능	현 상태로 유지
1~5	매우 낮음 (무시할 위험)	현재 안전대책 유지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9조(주지방법)**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안전보건교육,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군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 주요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단위작업장소	작업내용	관련기계·기구· 설비(관리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발생가능 재해형태	위험성	비고

※ 단위작업장소에 대하여 사전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조사 기록

※ 위험성 : 해당 작업 시, 사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중',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저'로 작성



부서명	안전보건정보조사					작성자													
업무내용						근로자수	명												
공정(작업) 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그 밖의 유해위험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 정보</li> <li>-</li> <li>○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li> <li>-</li> <li>○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li> <li>-</li> <li>○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li> <li>○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li> <li>-</li> <li>○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유□, 무□)</li> <li>○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kg)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li> <li>○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li> <li>○ 근로자 건강진단 유무 (유□, 무□)</li> <li>○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여성근로자</td><td><input type="checkbox"/></td> <td>1년 미만 미숙련자</td><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고령근로자</td><td><input type="checkbox"/></td> <td>비정규직 근로자</td><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외국인근로자</td><td><input type="checkbox"/></td> <td>장애근로자</td><td><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li> <li>-</li> </ul>		여성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미숙련자	<input type="checkbox"/>	고령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장애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미숙련자	<input type="checkbox"/>																
고령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장애근로자	<input type="checkbox"/>																

※ 유해화학물질 :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시행규칙 별표11의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 · 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찾음
수행자 성명 :	
수행일시 :	
<u>유해 · 위험작업</u> (1)  (2)  (3)	<u>사고, 질병의 유형</u>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시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를 표시함
※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표시함	
<u>사고의 유형</u> ① 떨어짐                      ⑨ 감전 ② 넘어짐                      ⑩ 폭발·과열 ③ 깔림                          ⑪ 화재 ④ 부딪힘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⑤ 맞음                          ⑬ 이상온도·물체접촉 ⑥ 무너짐                      ⑭ 화학물질 누출, 접촉 ⑦ 끼임                          ⑮ 기타 ⑧ 절단, 베임, 찢림	
<u>질병의 유형</u>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현장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p>수행자 성명 : <span style="float: right;">근로자 성명(소속) :</span></p> <p>수행일시 :</p> <p>경험담 1</p>  <p>경험담 2</p>  <p>경험담 3</p>  <p>※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p>	
<p>근로자 의견</p>  <p>○ 유해·위험 경험의 원인과 반성할 점</p>	<p>수행자 의견</p>  <p>○ 경험에 대한 조언</p>

[별지 제5호서식] 위험성평가표

## 위험성평가표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구분	유해위험요인파악			관련근거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 재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 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별지 제6호서식]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구분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 기준 등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요구일	조치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NO	세부내용					



#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 개정배경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배 소지 조항 존재
  - 적용범위가 공무원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에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필수 개최사항임에도 안전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정기회의 미개최 적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법령 재기재 자치법규는 제정하지 않도록 권고

###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법제처) p9 발췌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자치법규는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자치법규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한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 자치법규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해당 자치법규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지 않도록 함.

## □ 주요 개정내용

- 규정 적용범위를 군 시행 모든 사업장으로 개정(안 제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를 군수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우리군 관리감독자 명확화(안 제5조)
- 산업보건의 선임방식을 위촉으로 규정하고 자문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안전보건 관리계획 작성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 안전보건계획 명칭을 안전보건 관리 계획으로 법상 명칭으로 변경
  - 작성 체계를 군 기본계획, 부서별 실행계획으로 세분화
  - 작성주체를 기본계획은 안전관리부서에서 군수로 변경하고 실행계획을 관리감독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신설
  - 작성내용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여한 의무이행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함
- 사고조사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규정(안 제15조)
  -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발병한 산재의 경우 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함.
  - 그 외 산재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사고조사토록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5명 이내로 하는 규정을 4명 이상\* 10명 이내\*\*로 개정(안 제16조)
  - \* 4명 이상은 법 규정사항이 아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2022, 고용노동부) p47 권고사항임.
  - \*\* 10명 이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사항임.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 고시

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 10. 1.

### 거 창 군 수

####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 2. 통제현황

가. 입산통제구역 :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등 12개 권역 21,677ha

나. 등산로 폐쇄구간 : 거창군 마리면 영승~갈림길 구간 등 19개 구간 104.3km

다. 화기물 등 소지 금지구역 : 거창군 관내 전체 산림

#### 3. 통제기간 : 2022. 11. 1. ~ 2023. 5. 15. / 7개월간

####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입산하지 못합니다.

나. 거창군 관내 전체 산림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과 관련하여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수 없습니다.

#### 5. 입산허가 절차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신청 후 확인증을 교부 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 6.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

-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바.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차.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 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 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입산통제구역

권역(산)명	입산통제내역			비고
	위치(읍면)	필지수	면적(ha)	
합계	12개 권역	7,734	21,677	거창군 산림면적의 35%
현대미산	주상, 웅양, 가북	525	2,840	
취우령	거창, 주상, 마리, 위천	1,234	2,288	
금귀봉	거창, 주상, 남하, 가조, 가북	485	1,109	
봉우산	웅양	210	740	
노금지재	주상, 웅양, 고제	1,022	1,903	
대덕산	웅양, 고제	294	719	
두루봉	고제	488	1,401	
호음산	고제, 북상, 위천	580	2,608	
기백산	위천, 마리	255	1,150	
망실봉	거창, 마리, 남상	742	1,344	
보해산	주상, 가북	474	1,395	
감악산	남상, 신원	1,425	4,180	

□ 등산로 폐쇄구간

권역(산)명	등산로 폐쇄내역			비고
	위치	노선명	연장(Km)	
합계		19개 노선	104.3	
취우령	마리면	영승~갈림길	2.6	
취우령	위천면	당산~갈림길	4.3	
금귀봉	거창읍	구례~갈림길	4.7	
금귀봉	남하면	둔마~갈림길	1.8	
보해산	주상면	외장포~갈림길	3.3	
가야산	가북면	어인~정상	4.0	
장군봉	가조면	당동~갈림길	2.6	
비계산	가조면	도리~정상~상수월	6.4	
비계산	가조면	마장재~갈림길	1.5	
두무산	가조면	수포대~정상	3.4	
월봉산	북상면	내계~수망령~정상~남령	11.2	
수도산	가북면	개금~단지봉~수도산	22.6	
양각산	가북면	수재~양각산	1.5	
양각산	가북면	금광~현대미~양각산	7.4	
양각산	가북면	어인~양각산	4.3	
현대미산	웅양면	회남재~정상	4.7	
현대미산	웅양면	산포~갈림길	5.5	
망실봉	거창읍	둔동~망실봉	7.0	
감악산	남상면	명산골~정상	5.5	

□ 등산로 개방구간

권역(산)명	등산로 개방내역			비고
	위치	노선명	연장(Km)	
합계		30개 노선	134.8	
거열산성	거창읍	건계정~거열산성~미특덤이	6.0	
아홉산 (취우령)	거창읍	건흥산~아홉산	3.4	
아홉산 (취우령)	거창읍	구산~정상	1.7	
아홉산 (취우령)	거창읍	죽동~정상	2.8	
아홉산 (취우령)	마리면	상울~갈림길	4.8	
아홉산 (취우령)	마리면	풍계~갈림길	4.0	
아홉산 (취우령)	위천면	원당~갈림길	4.1	
금귀봉	거창읍	양평~정상	5.5	
금귀봉	가북면	정봉~갈림길	3.0	
보해산	가북면	회남재~정상	5.5	
보해산	주상면	거기~정상	3.6	
보해산	가북면	양암~갈림길	1.9	
수도산	가북면	십방~양각산~수도산	8.5	
우두산	가조면	고전사주차장~의상봉~우두산	4.8	
우두산	가조면	의상봉~장군봉	2.5	
장군봉	가조면	병산~소림사~정상	3.9	
숙성산	가조면	학산~숙성산~미너봉~수포대	11.1	
삼봉산	고제면	소사재~정상~배재	7.0	
기백산	위천면	기백산~금원산	4.9	
기백산	위천면	상촌~정상	4.7	
기백산	위천면	금곡~정상	7.4	
기백산	위천면	금원산휴양림~정상	4.3	
현성산	위천면	미폭~정상~금원산	6.6	
월여산	신원면	신기~정상	4.4	
망실봉	거창읍	건계정~정상	3.0	
망실봉	거창읍	운정~정상	2.6	
망실봉	거창읍	덕천서원~갈림길	2.0	
감악산	신원면	청연~연수사~정상	2.6	
감악산	신원면	청용~감악재~정상	4.4	
감악산	신원면	내동~감악재~정상	3.8	

## 입산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자 르 는 선 .....

##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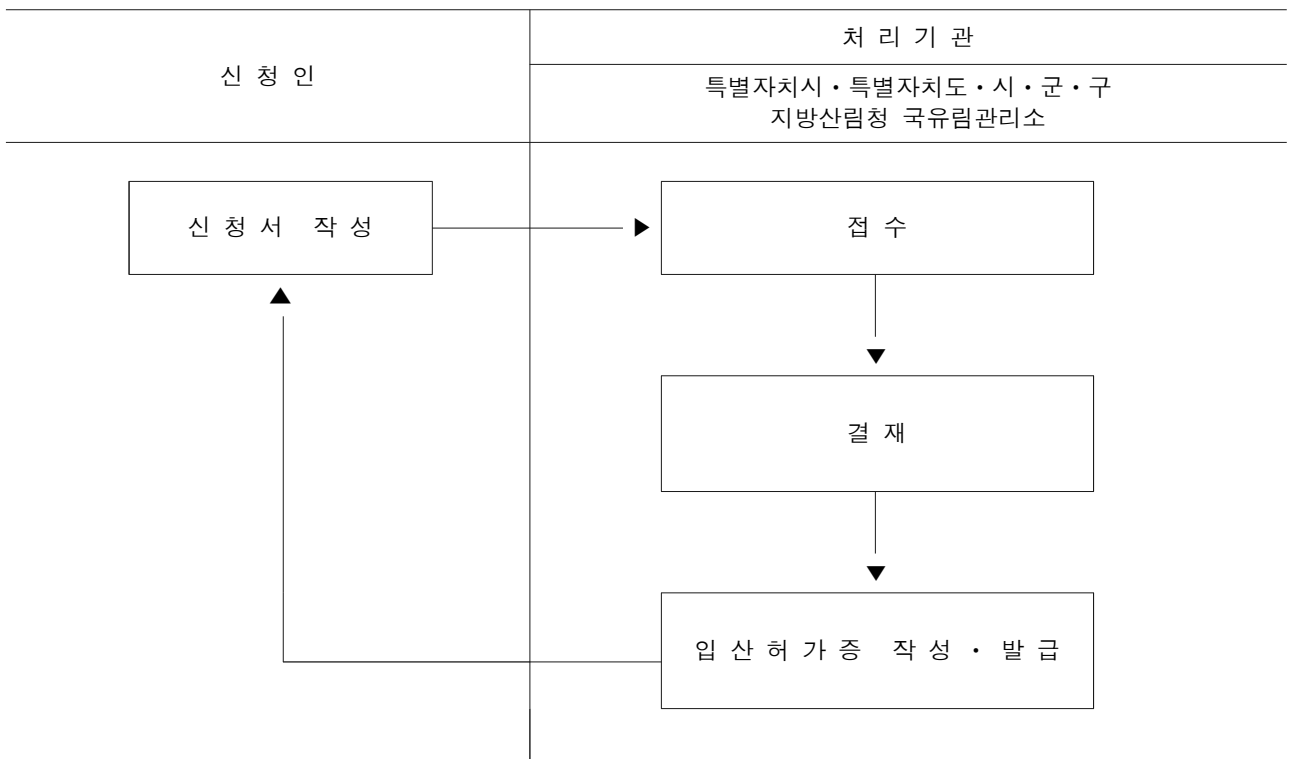
직인

주 의 사 항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106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양평생활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양평생활체육시설)
  - 명칭 : 거창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종류	위 치	사업규모(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육시설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42번지	62,653	62,653	6,630.94	6,087.94	거고 제2011-96호 (2011.12.15.)	

- 세부내용 : 족구장·테니스장·물탱크실 증축 건립[건축면적 8,185.59m<sup>2</sup>(증6,630.94m<sup>2</sup>), 연면적 7,622.43m<sup>2</sup>(증6,087.94m<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체육시설사업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b>계</b>					<b>155,642</b>	<b>62,653</b>		
1	거창읍 대동리	11		체	19,549	4,959	거창군수	
2	거창읍 양평리	342		체	22,917	22,917	거창군수	
3	거창읍 양평리	363	1	공	25	25	거창군수	
4	거창읍 양평리	368		체	14,337	6,836	거창군수	
5	거창읍 양평리	378	7	공	32	32	거창군수	
6	거창읍 양평리	378	9	답	2	2	거창군수	
7	거창읍 양평리	378	10	답	3	3	거창군수	

8	거창읍 양평리	1141	1	체	27,597	15,726	거창군수	
9	거창읍 양평리	1160		체	64,964	5,937	거창군수	
10	거창읍 양평리	1184		체	5,981	5,981	거창군수	
11	거창읍 양평리	1184	3	체	201	201	거창군수	
12	거창읍 양평리	1184	5	잡	34	34	거창군수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65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 등록 공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5.

## 거창군수

1. 재등록 및 폐기 사유 : 인증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
2. 재등록 공인  
가. 재등록 공인 : 1점  
나. 최초 사용일 : 2022. 10. 7.
3. 폐기 공인  
가. 폐기 공인 : 1점  
나. 폐기일 및 방법 : 2022. 10. 7./ 거창군 기록관(문서고) 이관.
4.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재등록	폐 기
(인증기용) 민원사무전용 주상면장인	2.1cm×2.1cm	